

2025타경30356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1계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조성 소유물건(2025타경30356)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영주

감정평가서번호: JS2502-20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성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안창호

감정평가액	이억삼천이백삼십구만일백칠십원정(₩232,390,170.-)		
-------	----------------------------------	--	--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김영주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조성 (2025타경30356)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2.20	2025.02.20 2025.02.21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 13,670x- 3 이	토지	4,556.67	51,000	232,390,170
		하	여	백		
합계					₩232,390,1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소재 “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 ”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의뢰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 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 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감정평가 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년 02월 20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2월 20일이며 현장조사시 대상 물건의 존재 여부, 의뢰 목록과 현황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을 조사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 가. 본건은 공유지분 중 “김조성” 지분만의 감정평가로 대상토지의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면적사정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나.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1-1),(1-2)가 소재함.
- 다.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사진용지” 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는 등으로 목측상 확인이 불분명한 추가적인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입찰시 유의바람.
- 라.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1-1) 및 제시외분묘 등으로 인하여 그 제시외건물 등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본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 명세표 비교란에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마. 본건 토지 중 기호(1) 임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입목과 임지가 함께 거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 개요

■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 상황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삼성면 상곡리	산50-1	임야	13,670.0 × 1/3	계획관리지역	자연림	17,2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의 방법

1. 감정평가 근거 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원가법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가. 토지의 평가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1항 등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IV. 토지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감정평가 개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 ①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④ 당해 또는 인접 시 군 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을 것.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표준지 선정사유

- ① 기준시점 현재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25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 ② 위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에 의거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충청북도 음성군>

(공시기준일: 2025. 1. 1.)

기호	소재지	지번	면적 (m ²)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m ²)	비고
A	삼성면 상곡리	산62-2	694.0	임	자연림	계획관리	맹지	사다리 환경사	18,300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충청북도 음성군>

적용기간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 고
2025.01.01. ~ 2025.02.20	계획관리	0.163 (1.00163	충청북도 음성군 (25.01.01~25.02.20) (계획관리) 2025.01.01 ~ 2025.01.31 : 0.099 $(1 + 0.00099) * (1 + 0.00099 * 20/31)$ = 1.0016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 임야지대

조건	비교 항목
접근조건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자연조건	일조, 토양, 토질, 관계, 배수, 재해의 위험성 등
행정적조건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구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1	A	-	1.10	1.10	-	1.00	1.00	1.210
대상물건은 접근조건 [임도의 상태] 및 자연조건 [면적, 경사도 등] 에서 우세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 판례 “2003다3802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 36538, 1991. 12. 28.) 등에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2)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 선택

①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충청북도 음성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시점)	평가 목적 등	비 고
평가 사례 1	삼성면 청용리	산32-1	임야	계획관리	55,000	2024.01.04	담보	
평가 사례 2	대소면 대풍리	628-4	임야	계획관리	90,000	2024.02.28	담보	
거래 사례 ㄱ	삼성면 상곡리	산40	임야	계획관리	36,261	2023.07.25	실거래사례	

② 비교사례 선정

위 조사한 사례 중 용도지역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본건 토지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평가사례1>을 비교사례로 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과정

$$\text{산식}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 단가}) : \text{비교사례 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표준지 공시지가}) : \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비교표준지(A)

표준지 A (계획관리)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평가사례 1	공시지가 (원/㎡)						
사례기준 표준지 가액	평가사례 1	55,000	-	1.02704	1.000	0.747	42,196	2.302
기준시점 표준지공시지가	A	18,300	-	1.00163	-	-	18,330	
사정보정	감정평가사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사례에 사정이 개입될 여지 없음.							
시점수정	충청북도 음성군 계획관리지역(2024.01.04~2025.02.20) : 1.02704							
지역요인 비교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대등함.(1.000)							
개별요인 비교	가로	접근	환경(자연)	획지	행정	기타	비교치	
	-	0.90	0.83	-	1.00	1.00	0.747	
비교표준지는 접근조건 [임도의 상태] 및 획지조건 [면적, 경사도 등] 에서 열세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인근지역 지가수준 검토

① 인근지 호가수준

용도지역	토지용도	가격수준	비 고
계획관리지역	자연림	45,000~55,000원/m ²	대상토지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에서 검토한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 평가사례, 거래사례 및 장래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액 결정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비교표준지 기호	적용 보정치
A	2.30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산식: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m ²)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단가 (원/m ²)	단가 (원/m ²)
1	18,300	1.00163	1.000	1.210	2.30	51,012	5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내역

가. 감정평가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나. 비교 거래사례 선정

1) 선정 기준

토지만의 거래사례이거나 토지거래가능가액이 분리 가능한 정상적인 인근지역내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고 가치형성요인비교가 가능한 거래사례가 선정 기준임.

2) 인근 유사물건 거래사례

<충청북도 음성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역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 고
거래 사례 ㄱ	삼성면 상곡리	산40	임야	계획관리	36,261	2023.07.25	실거래사례

3) 비교 거래사례 선정

대상토지와 위치 및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ㄱ>을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사정보정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라.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충청북도 음성군>

적용기간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 고
2023.07.25 ~ 2025.02.20	계획관리	4.146 (1.04146)	충청북도 음성군 (23.07.25~25.02.20) (계획관리) 2023.07.01 ~ 2023.07.31 : 0.089 2023.08.01 ~ 2023.08.31 : 0.174 2023.09.01 ~ 2023.09.30 : 0.273 2023.10.01 ~ 2023.10.31 : 0.267 2023.11.01 ~ 2023.11.30 : 0.344 2023.12.01 ~ 2023.12.31 : 0.282 2024.01.01 ~ 2024.12.31 : 2.574 2025.01.01 ~ 2025.01.31 : 0.099 $(1 + 0.00089 * 7/31) * (1 + 0.00174) * (1 + 0.00273) * (1 + 0.00267) * (1 + 0.00344) * (1 + 0.00282) * (1 + 0.02574) * (1 + 0.00099) * (1 + 0.00099 * 20/31)$ $= 1.04146$

※ 미고시된 월의 지가변동률은 고시된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바. 개별요인 비교

구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대상토지	거래사례							
1	ㄱ	-	1.15	1.20	-	1.00	1.00	1.380
대상물건은 접근조건 [임도의 상태] 및 자연조건 [경사도 등] 에서 우세임.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산식: 거래사례 토지단가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구분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m ²)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m ²)	시산단가 (원/m ²)
대상 토지	거래 사례							
1	ㄱ	36,261	1.00	1.04146	1.000	1.380	52,115	52,000

3.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을 위한 시산가액 조정 및 의견

가. 토지 시산가액

대상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m ²)	단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1	삼성면 상곡리	산50-1	13,670.0 × 1/3	51,000	5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 12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다. 토지 단가의 결정

대상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m ²)	단 가(원/m ²)	비고
1	삼성면 상곡리	산50-1	13,670.0 × 1/3	51,00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산50-1	임야	계획관리지역	1 13,670x- 3	4,556.67	51,000	232,390,170	매각지분 갑구 2번 공유자 김조성 지분 3분의 1전부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경우 의 가액 229,000,000
합 계								₩232,390,17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소재 "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 "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다소 불편시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일반적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대체로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까지 로폭 약 2m 내외의 포장 또는 비포장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 분묘 수기가 소재함.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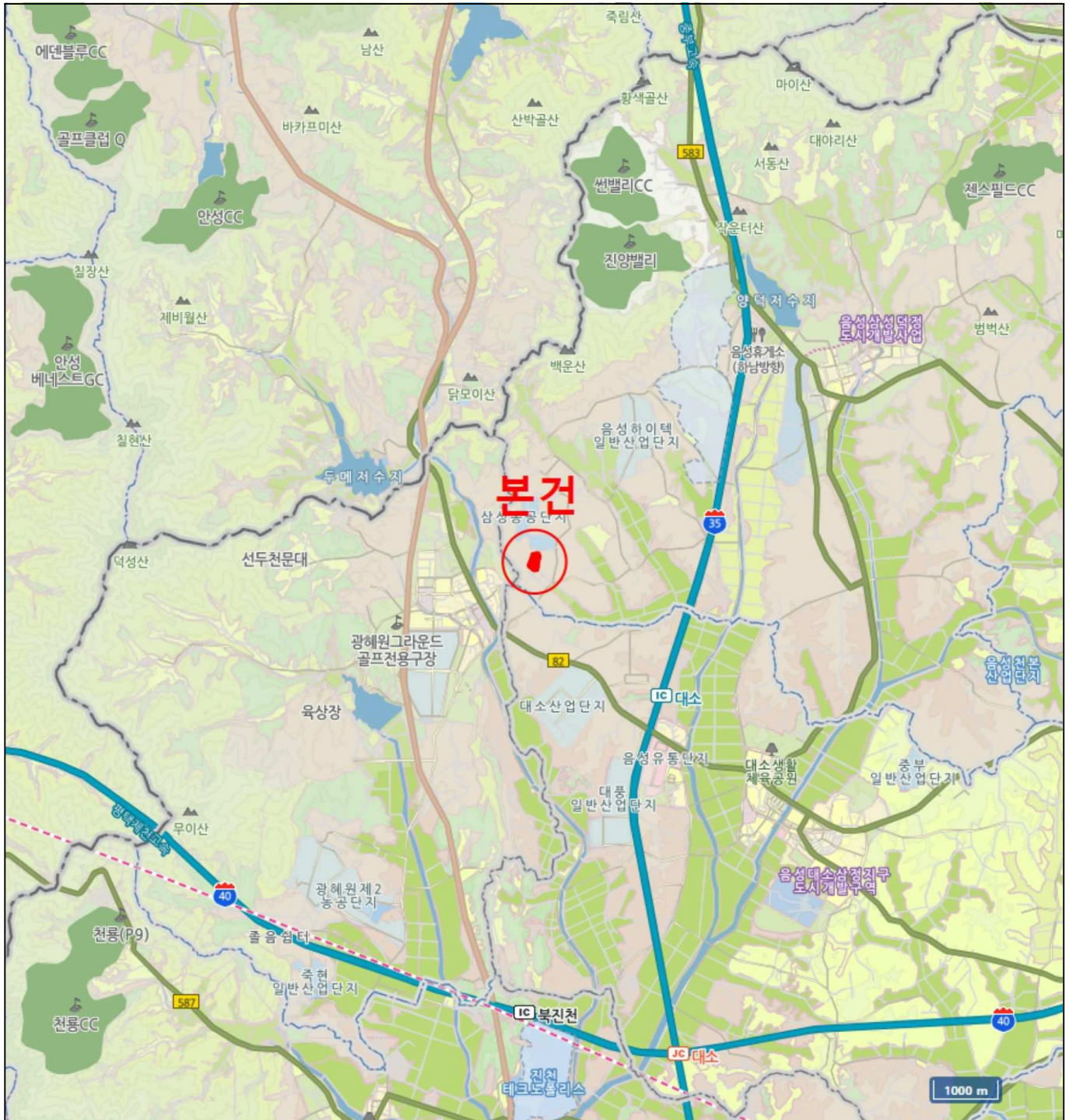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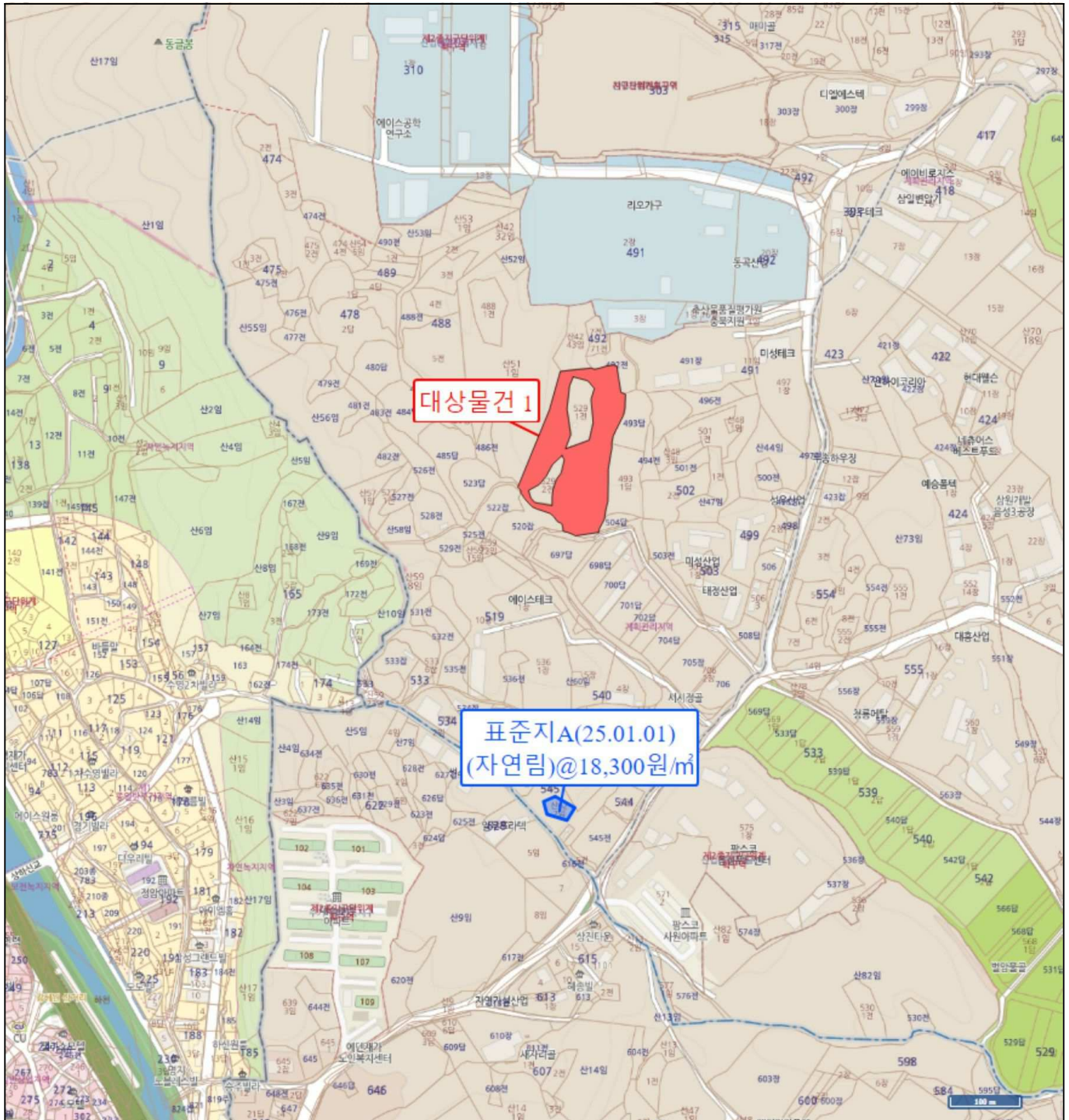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산50-1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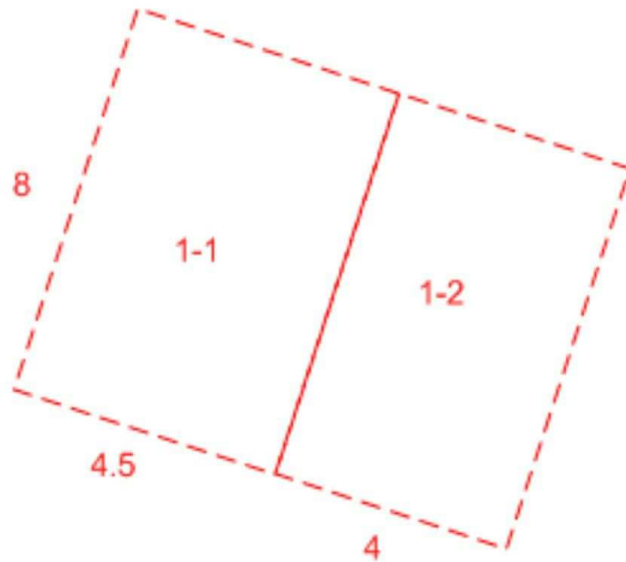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산50-1



건물개황도



축척없음



【 제시외건물 】

1-1) 조립식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약36㎡

1-2) 목재 판넬지붕(차양) 약32㎡



(1)





(1)



(1)



(1)



(1)



(1)



(1-1), (1-2)



(1-1), (1-2)



(1-1), (1-2)

